

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792호

의 안 명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결 일 2023. 10. 23.

주 문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를 별지와 같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0월 23일

위 원 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중 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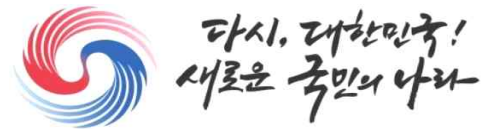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지】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2023. 10.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일반현황	2
III. 문제점 분석	5
가. 2년마다 성적 갱신 압박으로 수험생 부담 가중	5
나. 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제도 확대 시행 요구	9
IV. 개선방안	10
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	10
나. 공인어학시험성적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10
V. 조치사항	11

[붙임]

1. 국가전문자격증의 종류 및 근거법률·시행기관 현황
2. 어학시험 대체 규정 근거 법령

I. 추진배경

□ 국가자격시험의 과목면제, 자동자격 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가 수험생들에게 자격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으로 **공정기회 보장을 저해한다는 논란** 직면

○ 이에, 새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권익위 중심**으로 기존 **공직경력특례제도의 개선**을 추진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91(실천과제) :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 한편,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 시행사는 **어학시험성적 유효기간을 2년만 보증**하고 있어, 시험 **응시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실정

○ 시험준비·응시료 등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한을 확대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

※ 국가공무원 시험은 '21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인사처 시스템(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 시 유효기간 5년 인정을 적용 중

○ 이후, 주된 수험고객인 젊은 수험생을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기한 연장을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도입해 달라**는 목소리가 증가

※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갱신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각종 자격시험도 확대 인정해달라’ (국민신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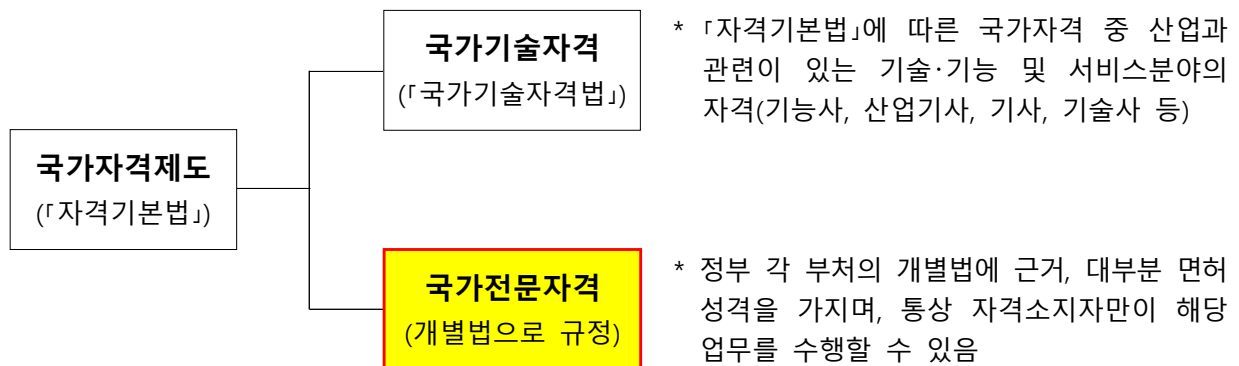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에 더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를 추진

II. 일반현황

가. 국가전문자격제도 현황

-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직종의 자격증으로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소관부처 등에서 운영·관리

※ 국가전문자격증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6개 부처에서 총 176개 종목** 운영(1·2급 등급 구분 또는 종목별 동일자격은 하나로 취급)



【소관부처별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

소관부처	종목 수	소관부처	종목 수	소관부처	종목 수
기획재정부	3	보건복지부	36	원자력안전위원회	5
교육부	8	환경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고용노동부	4	경찰청	4
법무부	2	여성가족부	2	소방청	3
국방부	13	국토교통부	25	문화재청	2
행정안전부	3	해양수산부	17	특허청	1
문화체육관광부	15	중소벤처기업부	2	산림청	7
농림축산식품부	12	공정거래위원회	1	해양경찰청	2
산업통상자원부	1	금융위원회	3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복 포함

【주요 국가전문자격의 종류 및 소관부처·시행기관 현황】

No.	자격명	근거법률	소관부처(법률)	시행기관
1	변호사	변호사법	법무부	법무부
2	법무사	법무사법	법무부	법원행정처
3	세무사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4	관세사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	보세사	관세법	기획재정부	한국관세물류협회
6	행정사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8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9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10	변리사	변리사법	특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1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2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소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소방청	소방안전협회
14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소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5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6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7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8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9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1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2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3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외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4	문화재수리기능사	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문화재청
25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문화재청
26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27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8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9	경영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30	기술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실시 현황

- 176개 국가전문자격 중 어학 능력을 기본소양으로 인정하여 **시험 과목 중 영어시험을 시행하는 자격은 총25개**로 확인

【영어시험을 시험과목으로 포함한 국가전문자격시험 현황】

No.	자격명	근거법률	소관부처	시행기관
1	세무사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	관세사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3	행정사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인력공단
4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6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7	변리사	변리사법	특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8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0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1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2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3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4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5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6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7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8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9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	감정사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1	검수사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2	검량사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3	도선사	도선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4	경영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5	기술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Ⅲ. 문제점 분석

가. 2년마다 성적 갱신 압박으로 수험생 부담 가중

- 시험과목으로 영어가 포함된 국가전문자격 총25개 중 영어시험을 TOEIC 등 주요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는 자격은 총15개

【영어시험을 TOEIC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실시 국가전문자격시험 세부현황】

No.	자격명	근거법률	소관부처	시행기관
1	세무사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	행정사(외국어번역 행정사)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3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5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6	변리사	변리사법	특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7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8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국토교통부	
9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0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1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2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13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4	경영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15	기술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 ▶ 그 외 10개 자격(Ex.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항공안전법」에 의한 부조종사·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등)은 직접 영어시험을 실시

- 한편, 공인어학시험의 시험주관사는 응시자가 취득한 시험성적을 2년 간 유효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한

【주요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기간 현황】

시험명	시험 주관사	개발기관	성적인정기간
TOEIC, TOEFL, GRE, SAT	한국TOEIC위원회	ETS	2년
TEPS	한국TEPS관리위원회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원	

【(예시) 토익성적표에 표기된 시험성적인정 기간(한국토익위원회 홈페이지)】

TOEIC® 성적표 ▶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OFFICIAL SCORE CERTIFICATE

홍길동
HONG GILDONG

Name

999991

Registration number

2000/01/01

Date of birth (yyyy/mm/dd)

2020/09/27

Test date (yyyy/mm/dd)

2022/09/27

Valid until (yyyy/mm/dd)

LISTENING

Your Score **375**

5 ————— 495

0% ————— 99%

▲ 63

Percentile Rank

READING

Your Score **335**

5 ————— 495

0% ————— 99%

▲ 67

Percentile Rank

TOTAL SCORE

710

ETS, the ETS logo, TOEIC and 토익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ET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nd used under license in the Republic of Korea by YBM.

ST083E7000001

▶ 2020. 9. 27. TOEIC 시험을 응시(Test date)한 경우 시험성적표상 유효기간(Valid until)은 2년으로 제한되므로, 2022. 9. 27.까지만 활용 가능함

- **자격시험 응시의 선행요건인 어학성적이 짧은 기간*만 보증됨에 따라, 어학성적부터 갱신해야 하는 수험생들(특히, 청년층)에게는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

※ 대다수 국가전문자격시험법령은 시험주관사가 보증하는 최근 2년 내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의 경우만 3년을 인정

【참고】「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③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④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 [별표 1의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등급(제4조제3항 단서 관련)

1. 영어	가. 토플 (TOEFL)	...	...
	나. 토익 (TOEIC)	...	...
	...	...	...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등급은 **준학예사 시험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국가자격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요구 민원 재구성(국민신문고)**

▶ (사례 1) 자격시험을 위한 영어성적 제출기한 연장 계획 문의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어학성적을 먼저 응시해야는데 인정기간이 2018. 1. 1.부터 2020. 4. 17.까지의 성적임. 그런데 3.15, 3.22 시험은 취소되고 4.5도 취소 가능성이 커 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됨.
- 세무사 시험은 원서접수 시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이 연기됐는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도 1차 원서접수에서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이 연기되길 바람.**

(2020. 3월)

▶ (사례 2)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어학시험 성적 입력 기한 연장 요청

- 3월 중순 세무사 시험에 접수하기 위해 공인어학시험을 봐야 하는데 코로나로 2월 말, 3월 초 시험이 취소됨.
- 그 후 시험을 치르면 세무사 **원서접수기간 이후 성적이 나오는데, 어학시험 성적만이라도 입력 기한 등을 연장해주실 수 있는지.**

(2020. 3월)

▶ (사례 3) 공인어학시험일정의 취소에 따른 어학성적 증빙 기간 유예 요청

- 코로나 사태로 공인어학시험이 일방적으로 취소·연기되면서 공인어학점수를 필수로 증빙해야 하는 자격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제때 신청하더라도 지원자들이 몰려 응시하지 못했고 급히 다른 시험을 신청했으나 역시 취소되어 응시 기회가 원천 봉쇄됨.
- 접수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한 어학시험 증빙을 1차 시험 이전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수험생의 응시 기회의 공정성을 수호해 주시기 바람.**

(2020. 3월)

▶ (사례 4) 자격시험의 어학 응시자격 기한의 연장 요청

-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2022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인데 토익시험은 4월 10일에 있고 4월 20일에 성적이 발표되어 세무사 원서접수 자격을 충족하는 어학 점수를 얻었더라도 시행기관에서 성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응시기회가 박탈됨.
- **세무사 시험이 1년에 한번만 볼 수 있는 시험이므로 응시 자격은 최대한 열어 주는게 옳다고** 생각함.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2. 4월)

나. 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제도 확대 시행 요구

- 한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TOEIC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기 시행 중

※ 현재 인사혁신처는 '21년 공무원 채용 시험부터 응시자가 **인사처 시험성적 등록시스템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이를 5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기관에도 확대 개편 예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공기관도 활용토록 연계 추진

- 최근 청년 응시생을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입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확대·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 증가**

※ 자격시험 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의 확대적용 요구 민원 재구성(국민신문고)

▶ (사례 1) 공무원시험에서의 성적인정기한 연장 제도를 자격시험에 확대 적용 요청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되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에는 공인어학시험의 성적이 요구되고, 자격시험일로부터 역산해 2년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인정됨.
-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갱신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공무원 시험에서 공인어학시험 인정범위를 최대 5년간 유효하도록 연장 중이니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확대 인정해줄 것을 청원함.**

(2021. 8월)

▶ (사례 2) 자격시험에 공무원시험에 도입된 공인어학성적 인정범위 확대 도입 요청

-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이 요구됨. 당해 시험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의 기간으로 인정기한을 제한함.
- 최근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갱신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공무원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인정범위를 5년간 유효하도록 연장함.**
-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공인회계사 시험도 공인어학시험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여** 사회적 피로도를 낮추고 **편익을 높여주길 요청함.**

(2021. 8월)

IV. 개선방안

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

- 국가전문자격시험 과목으로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인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시,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

⇒ 「세무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감정평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등 10개 법령의 '어학성적인정기한'에 관한 조항 개정

【(예시)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개정안】

근거 조항	내 용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 (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성적이 확인되는 경우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나. 공인어학시험성적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 시험 시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공인어학시험성적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 (예시)

- 산업인력공단 시행 시험 : 국가자격증시험 포털*(Q-net) 활용
- 타 기관 시행 시험 : 개별 시스템 구축 또는 산업인력공단 등 협조

*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입된 사전등록방식 활용 참고

V. 조치사항

세부과제	개선방안	소관부처 조치기한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및 사전등록제 도입	□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 ◦ 국가전문자격시험 과목으로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인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시, 어학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 ⇒ 「세무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감정평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등 10개 법령의 ‘어학성적인정기한’에 관한 조항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24.10월)
	□ 공인어학시험성적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 시험 시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공인어학성적 사전 등록 시스템* 구축 ※ (예시) 산업인력공단 시행 시험 : 국가자격증시험 포털*(Q-net) 활용 타 기관 시행 시험 : 개별 시스템 구축 또는 산업인력공단 등 협조 * 공무원 채용시험에 도입된 사전등록방식 활용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위원회 (‘24.10월)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소관부처	시행기관
1	변호사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법무부
2	법무사	법무사법	법무부	법원행정처
3	세무사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4	관세사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	보세사	관세법	기획재정부	한국관세물류협회
6	행정사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공공기록물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8	기업재난관리사	기업재해경감법	행정안전부	기업재해경감협회
9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0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11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12	변리사	변리사법	특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3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4	자동차운전면허	도로교통법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5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6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도로교통법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7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8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9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1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2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3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4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26	건축사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소관부처	시행기관
27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28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29	택시운전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0	버스운전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1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2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3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4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5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6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7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8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9	항공기관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0	항공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1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2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3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4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협회
4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46	스포츠지도사(5종)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연수원
47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연수원
48	경주선수	경륜·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49	경주심판	경륜·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50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
51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52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3	사서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54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5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6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7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8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9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1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3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4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65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66	수의사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67	환지사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68	말조련사	말산업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69	장제사	말산업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70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71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2	경매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3	감정사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4	검수사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5	검량사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76	도선사	도선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77	수산물질병관리사	수산물질병관리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8	고속구조정조종사	선원법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79	구명정조종사	선원법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80	의료관리자	선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1	전자기관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2	통신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3	항해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4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5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6	기관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7	운항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8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89	수송구조사	수상구조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90	무선통신사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1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2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9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4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5	경영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6	기술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7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98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99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소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소방청	소방안전협회
101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소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102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03	어린이집원장	영유아교육법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104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한국영양교육평가원
105	보육교사	영유아교육법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106	장례지도사	장례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7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8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9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10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11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12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3	전문의	의료법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114	의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5	간호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6	간호조무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7	치과의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8	한 의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9	조산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0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1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2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3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4	치과기공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5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126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8	약사	약사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9	한약사	약사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0	한약조제사	약사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1	위생사	위생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2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3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4	안마사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5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6	보조공학사	장애인보조기기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7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8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생산성본부
139	유통관리사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140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산림청	산림청지정기관
141	목조기술자	목재이용법	산림청	산림청
142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법	산림청	산림청
143	산림기술자	산림기술법	산림청	산림청
144	산림치유지도사	산림휴양법	산림청	산림청
145	수목치료기술자	산림보호법	산림청	산림청지정기관
146	산림레포츠지도사	산림휴양법	산림청	산림청
14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	환경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48	환경교육사	환경교육법	환경부	환경부
149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150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시험검사법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15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2종)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3	원자로조종감독면허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4	핵연료물질취급감독면허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5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6	보건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57	사서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58	실기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59	영양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60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61	정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62	준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63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교육부	교육부
164	군항공교통관제사	군용기운용법	국방부	국방부
165	국방사업관리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한국생산성본부
166	수중발파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67	심해잠수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68	폭발물처리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69	항공장구관리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0	헬기정비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1	영상판독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2	국방보안관리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3	낙하산전문포장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4	함정손상통제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5	국방무인기조종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6	수중무인기조작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No.	자격 및 법률명	소관부처	근거 법령
1	세무사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 (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별표 2와 같다. ③ <u>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u>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2	행정사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u>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u>

No.	자격 및 법률명	소관부처	근거 법령
3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u>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u>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 4. 19.>

No.	자격 및 법률명	소관부처	근거 법령
4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 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 ⑧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제2호 및 제3호(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⑨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및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No.	자격 및 법률명	소관부처	근거 법령
5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은별표 1과 같다. ⑤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별표 1의2와 같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원서 2.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제4호가목1)에 따른 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⑦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험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No.	자격 및 법률명	소관부처	근거 법령
6	변리사 (변리사법)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 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2와 같다. ⑥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2에서 정한 영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o.	자격 및 법률명	소관부처	근거 법령
9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통역안내사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3. 삭제<2019. 11. 20.> ② <u>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프랑스어의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별표 15와 같다.
10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11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12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No.	자격 및 법률명	소관부처	근거 법령
13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법 제6조 제3항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 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④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 :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중 2과목 선택 ⑤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외국어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⑥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등급(제4조제3항 단서 관련)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등급은 준학예사 시험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 점수·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청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합격 기준 점수·등급을 적용한다.

No.	자격 및 법률명	소관부처	근거 법령
14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벤처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①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u>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u> ④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경영기술지도사법 제3조(지도사의 자격)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에 관한 법률)		